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257
------	------

제출일자 : 2022. 11. 10.

제 출 자 : 금 천 구 청 장

1. 제안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한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범위를 서울특별시 지방세 관련 자치법규 개정 계획에 따라 인상·통일하여 조례에 반영하고, 일몰 규정을 정비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확대함(안 제14조의2)
- 나. 조례의 유효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92조의2
- 2) 「지방세기본법」 제30조
- 3) 「지방세징수법」 제23조, 제24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해당부서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첨부
- 2) 입법예고: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생략
-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 별도첨부
- 4) 규제심사: 원안동의(기획예산과)
- 5)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민원감사담당관)
- 6) 성별영향평가: 원안동의(가족정책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의 제1항제1호 중 “250원”을 “800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600원”을 “1,600원”으로 한다.

조례 제1073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4조의2(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지방특례제한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액공제 금액은 다음과 같다.</p> <p>1. 「지방세기본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 방식(이하 이 조에서 “전자송달 방식”이라 한다)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지방세징수법」 제23조에 따른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계좌 자동이체 방식(이하 이 조에서 “자동이체 방식”이라 한다)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u>250원</u></p> <p>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u>600원</u></p> <p>② (생략)</p>	<p>제14조의2(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 ----- ----- ----- -----.</p> <p>1. ----- ----- ----- ----- ----- ----- ----- ----- ----- -----</p> <p style="text-align: right;">-----<u>800원</u></p> <p>2. ----- ----- -----</p> <p style="text-align: right;">----- <u>1,600원</u></p> <p>② (현행과 같음)</p>
<p>부칙 (제1073호, 2019.12.31.)</p> <p>제2조(유효기간) 이 조는 <u>2022</u> <u>년 12월 31일까지</u> 효력이 있다.</p>	<p>부칙 (제1073호, 2019.12.31.)</p> <p>제2조(유효기간)-----<u>2025</u> <u>년 12월 31일</u>-----.</p>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비용발생 요인

- 조례안 제14조의2에 따라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이 확대되어 세입 감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제1호

제13조(비용추계서 작성)

-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 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 조례안 제14조의2 개정에 따른 등록면허세 감소액 4,622,600원
- 2022. 1월 현재 조례안 제14조의2에 따른 자동이체 등 건수

등록면허세(면허) 정기분	합계	전자고지	자동이체	전자고지 + 자동이체
2022년 1월	7,004건	4,775건	517건	1,712건

- 2022.1월 현재 : $\{(4,775+517) \times 250\text{원}\} + (1,712 \times 600\text{원}) = 2,350,200\text{원}$
- 조례 개정 후 : $\{(4,775+517) \times 800\text{원}\} + (1,712 \times 1,600\text{원}) = 6,972,800\text{원}$ 으로 확대되는 지방세 세입 감소분 (4,622,600원)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세무1과 세입총괄팀 장성태
연 락 처	2627-1222

현행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4.12.30., 2016.12.30.>

제3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천분의 1.5를 적용한다. <개정 2014.4.4>

제4조 삭제 <2015.10.8.>

제4조의2 (감염병 진료를 위한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진료를 위한 임시용 건축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본조신설 2022.4.20.]

제5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삭제 <개정 2012.04.10>

제6조(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삭제 <개정 2012.04.10>

제7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상업 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2.09.28>

제8조(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 대한 감면) 삭제 <개정 2012.04.10>

제9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삭제 <개정 2012.04.10>

제10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①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5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용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다음 각호의 기준일부터 10년간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3항에 따라 추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정한다. <개정 2020.7.17>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제2호 본문의 규정에 따른 감면은 사업개시일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2호·제3호 본문의 규정에 따른 감면은 재산을 취득한 날
- ②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제1항·제2항에 따른 재산세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일부터 10년간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신설 2020.7.17>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감면은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감면은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

제11조(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삭제 <개정 2012.04.10>

제12조(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① 「서울특별시금천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인 무허가건물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재산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4.12.30.>

- ② 제1항에 따른 무허가건물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 후에 그 무허가 건물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당해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3조(전직대통령 주택에 대한 감면) <개정 2014.12.30.> ①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호의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 ② 전직대통령 또는 그 미망인이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주택

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지방세법」제1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5로 한다.

제14조(서울특별시 준공업지역 내 도시형공장에 대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에 따른 준공업지역 내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경감한다. 다만, 기존의 공장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고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30., 2019.12.31.>

1. 공장용 토지에 대하여는 최초로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공장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신축 또는 증축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제목개정 2019.12.31.]

제14조의2(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의2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액공제금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4.26>

1. 「지방세기본법」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 방식(이하 이 조에서 “전자송달 방식”이라 한다)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지방세 징수법」 제23조에 따른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계좌 자동이체 방식(이하 이 조에서 “자동이체 방식”이라 한다)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250원<개정 2018.4.26., 2022.4.20.>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600원 <개정 2018.4.26., 2022.4.20.>
- ② 1장의 고지서에 구세와 시세가 같이 있는 경우 시세에서 세액공제를 한다. 다만, 시세가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는 구세에서 세액공제를 한다. [제목개정 2018.4.26.]<신설 2011.12.29>

제14조의3(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 및 제105조의2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및 출자총액 또는 재산총액의 증가에 따른 등기를 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산출세액이 11만2천5백원 미만인 때에는 4만2백원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6.12.30.] <개정 2018.4.26>

제14조의4(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제3항에 따라 이 조례에서 재산세가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감면율에 이 조례에서 추가로 감면율을 정하여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17.7.17.] <개정 2019.12.31.>

제14조의5(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공원이었다가 같은 법 제38조의2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지정된 토지, 지상건축물,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에 따른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본조신설 2019.12.31.]

제14조의6(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삭제 <삭제 2022.4.20.>

제15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 및 주택을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11.12.29., 2022.4.20.>

제16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1.12.29, 2020.7.17>

제17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2.04.10>

-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2.04.10., 2022.4.20.>

제18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 받은 자는 구청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관하여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18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10.08>

제19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을 적용) 이 조례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제20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5.10.08>

제21조(감염병 영업금지로 인한 세율의 경감) 제16조에도 불구하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영업이 금지된 고급오락장(「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4호에 따른 고급오락장을 말한다.)에 대한 재산세는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2호의2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80조제7호 또는 제8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조문신설 2021.9.29.>

1.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2.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4호에 해당하는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479호, 2006.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제497호, 2007.05.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523호, 2007.12.2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금천구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539호, 2008.05.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 칙 (제581호, 2009.06.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 칙 (제599호, 2009.12.24)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제611호, 2010.04.0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1조와 제14조 및 제15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635호, 201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687호, 2011.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지방세 납부를 위하여 전자 송달 또는 자동계좌이체 납부를 신청하였던 납세자에 대하여는 제14조의2에 따른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707호, 2012.04.10)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717호, 2012.09.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777호, 2014.4.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 칙 (제794호, 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이 있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제817호, 2015.10.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이 있다.

부 칙 (제890호, 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이 있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제930호, 2017.7.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4조의4의 개정 규정은 2017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이 있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제977호, 2018.4.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4조의2의 개정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이 있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1073호, 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이 있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1102호, 2020.7.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1201호, 2021.9.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21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5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감염병 영업금지로 인한 세율의 경감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1일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201호, 2022.4.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염병 진료를 위한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 개정 규정은 2021년 6월 1일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관계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7., 2014. 1. 1., 2014. 3. 24., 2020. 1. 15., 2021. 6. 8.>

1.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인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92조의2(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④ 「지방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 방식(이하 이 조에서 “전자송달 방식”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제23조에 따른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계좌 자동이체 방식(이하 이 조에서 “자동이체 방식”이라 한다)에 따른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6. 12. 27., 2017. 12. 26., 2021. 12. 28.>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250원부터 800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부터 1천600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 ② 제1항에 따른 세액의 공제는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같은 법에 따른 지방세의 소액 징수면제 기준금액을 한도로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그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본조신설 2010. 12. 27.] [제목개정 2017. 12. 26.]

지방세기본법

제30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2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 ② 제1항에 따른 교부에 의한 서류송달은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건네줌으로써 이루어진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의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의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 서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면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송달받을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확인하고 그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 ⑤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 송달서에 적어야 한다.
-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우편으로 서류를 송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 1. 서류의 명칭
 - 2. 송달받을 자의 성명 또는 명칭
 - 3. 송달장소
 - 4. 발송연월일
 - 5. 서류의 주요 내용
- ⑦ 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한다.
-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인하여 전자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교부 또는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4.>
- ⑨ 제7항에 따라 전자송달을 할 수 있는 서류의 구체적인 범위 및 송달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세징수법

제23조(신용카드에 의한 지방세 납부) ① 납세의무자는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 또는 경정하여 고지한 지방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목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하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 ② 납세의무자는 「지방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를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로 자동납부할 수 있다. 다만, 납부기한이 지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24.>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수납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 ④ 삭제 <2018. 12. 24.>
- ⑤ 신용카드에 의한 지방세 납부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자동계좌이체에 의한 지방세 납부) 지방세수납대행기관에 예금계좌가 설치되어 있는 납세의무자는 「지방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를 해당 예금계좌로부터 자동이체하여 납부할 수 있다. 다만, 납부기한이 지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24.>